

강의전문교원 임용 규정

제 정 : 2019. 11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강의전문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강의전문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비전임교원으로, 교과목 강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자격) 강의전문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.

1. 박사학위 소지자로 우리대학 강의경력이 1년 이상인 자
2. 석사학위 소지자로 우리대학 강의경력이 2년 이상인 자
3. 박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교육경력 및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4.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4조(직위) 강의전문교원의 직위는 강의전문교수로 한다.

제5조(임용기간) 강의전문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서장(전공주임 또는 학과장)의 제청으로 연장가능하며, 총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절차) ① 강의전문교원은 부서장(전공주임 또는 학과장)의 추천 또는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.

② 추천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부서장(전공주임 또는 학과장)은 추천자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 학기 종강일 2주전까지 추천하며, 공개채용의 경우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절차를 준용하되, 채용 및 심사 절차 중 일부를 생략 혹은 축소할 수 있다.

③ 강의전문교원 추천 및 공개채용 절차를 통과한 임용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며, 총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.

제7조(구비서류) 강의전문교원 신규임용 후보자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.

1. 임용지원서 1부
2. 임용추천서 1부
3. 학위증명서 각 1부
4. 성적증명서 각 1부
5. 경력증명서(또는 재직증명서) 1부

제8조(복무) ① 강의전문교원은 강의 및 실험실습을 담당한다.

- ② 강의전문교원은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된다.
- ③ 강의전문교원은 임용기간 도중 휴직할 수 없다.

제9조(책임시수) 강의전문교원의 책임시간은 고용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으로 한다.

제10조(보수) 강의전문교원의 정규강좌에 대한 강의료는 매 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 또한 대학이 필요로 하는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강의료 이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원평가) 강의전문교원의 평가는 수업평가 및 부서장평정 등으로 매년 실시하며 재임용에 반영한다.

- 제12조(재임용)**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의전문교원은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할 수 있다.
- ② 총장은 재임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사실과 재임용 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통지하고, 통지를 받은 강의전문 교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총장은 교원 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,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임용계약기간 중이라도 복무를 태만히 하거나 대학교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임용계약을 취소한다.

제13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강의전문교원은 본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<별지1호 서식>

강의전문교수 임용지원서

성 명	(영문)	생년월일		
E-mail		국 적		
주 소	우편번호()	연락처	휴대전화	
			긴급연락처	
1. 지원사항				
대학(원)	전공(학부)	직급	임용일자	
2. 학력사항				
재학기간(년월일)	학교명	학과(전공)	학위명(학위종별)	
	대학교		학사	
3. 경력사항(교육경력 및 산업체 경력)				
재직기간(년월일)	근무기간	근무기관명	직위(직급)	
4. 자격 및 면허				
자격 및 면허종별	발급처	취득일자(년월일)	자격 및 면허번호	
5. 주요연구실적(최근3년간)				
제목	학술지/출판사	게재확정일자	저자수	참여형태
6. 기타사항(대의활동, 사회봉사, 특허 등)				
20 년 월 일				
지원자 :				(인)
금 강 대 학 교 총 장 귀 하				

<별지2호 서식>

강의전문교수 임용추천서

추천자	소 속		전 공 주 임	
	연 락 처			
피추천자	성 명		연 락 처	
	생 년 월 일			
	최 종 학 위	(전공명)		
	주요경력사항			

추천사유(필요성, 임무, 강의·학생지도, 활용기간·활용방법 등을 기술)
*별지 활용 가능

위와 같이 _____ 교수 추천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

추천자 : _____ 전공주임 0 0 0 (인)

<별지3호 서식>

강의전문교수 신규임용제청서

성 명 :
생 년 월 일 :
연 락 처 :

위 사람은 본 전공 및 본교의 발전에 필요한 _____ 교수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강의전문교원 임용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본 학과에서 활용하고자 제청합니다.

- 1. 임용기간 : . . . ~ . . .
- 2. 담당교과목 :

학 기	과 목 명	시간/주	학 점	비 고

- 3. 기타 대학 및 전공발전 영역 : 별지활용가능

- 붙 임 : 1. 강의계획서 각 1부.
 2. 임용지원서 1부.
 3.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. 끝.

20 . . .

추천자 : _____ 전공주임 0 0 0 (인)

금강대학교 총장 귀하

<별지4호 서식>

강의전문교수 연장제청서

1. 대상자 인적사항

대 학		전 공 명		직 급	
인 적 사 항	성 명			생 년 월 일	
	주 소			연 락 처	
당 초 임 용 기 간	. . . ~ . . .		연 장 기 간	. . . ~ . . .	

2. 활용계획

	학 기	과 목 명	시 간/주	학 점	비 고
강의					
기타					

2. 연장 필요성 및 의견

*별지 활용 가능

붙 임 : 강의계획서 각 1부.

위와 같이 _____ 교수 연장을 제청합니다.

20

추천자 : _____ 전공주임 0 0 0 (인)

금강대학교 총장 귀하

<별지5호 서식>

강의전문교수 재임용 심사 평가표

학과	성명	생년월일	심사결과
			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, 부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

평가 항목	항목배점	배점한도	취득 점수
- 수업기간 준수 ※ 수업 미준수 시 1건당 3점 감점 ※ 전자출결 미사용시 1과목당 5점 감점	20	20점	
- 강의계획서 작성 및 성적입력 ※ 미작성 : 0점/ 기간 미준수 : 강좌당 -5점	15	15점	
- CQ(수업개선) 및 강의평가결과보고서 작성 ※ 미작성 : 0점/ 기간 미준수 : 강좌당 -5점	15	15점	
- 강의평가 평점 4.5 이상 - 강의평가 평점 4.0 이상~4.5 미만 - 강의평가 평점 3.5 이상~4.0 미만 - 강의평가 평점 3.5 미만	30 25 20 15	30점	
-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교육 참여 : 교육당 -3점	10	10점	
- 학교 발전기여도 가점	5/8/10	10점	
합계		100점	

- 1) 평가점수는 80점 이상이어야 재임용을 허가함.
- 2) 강의평가점수 : 5점 만점 기준이며, 해당 강사의 학기별 강의평가점수 평균으로 평가함.
- 3) 재임용 평가표는 교학지원처장, 소속학부장, 소속 전공주임의 합의로 학부장 혹은 주임 교수가 작성하여야 함
- 4) 대학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한 해 재임용 평가 위원과 합의해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할 수 있음.

학교발전 기여도에 대한 의견(가점 최대 10점) (건학이념 구현, 대학발전 기여도 및 학생지도 분야 공적 서술)	(우수 10점, 양호 8점, 보통 5점)

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년 월 일
 평가위원 : ○ ○ ○ (인)

금강대학교 총장 귀하